

# 2026년도 광주문화재단 K-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공모 안내

광주문화재단은 광주광역시,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청년 예술창작자가 보다 안정된 창작환경에서 기초예술 원천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<K-Art 청년 창작자 지원>을 새롭게 추진합니다.

본 사업은 2년 간 다년 지원, 조사연구와의 연계 등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방식을 고민하고 적용하였습니다.

지역 청년 예술 창작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.

2026년 02월 25일

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

## □ 사업목적

- 청년 예술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 및 기초예술의 원천 창작 활성화
  - K-컬처의 원천인 순수예술분야 청년 창작자에 대한 지원을 통한 K-Art 유망 인재의 창작활동 활성화
  - 원천 창작자의 예술활동 투입시간 확대를 통해 향후 문화적·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작 신작 IP 다수 확보

## □ 추진방향

- (다년지원 형태 추진) 청년 예술창작자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2년 간 지원형태로 추진
- (중간단계 성과 모니터링) 공공지원 책임성 및 성과 연계·확산을 위한 중간단계 성과보고서 모니터링 도입
- (증거기반 성과평가 운영) 사업 구조개선 및 추후 확산을 위하여 증거기반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

## □ 사업기간

- 2026년 ~ 2027년(총 2개년도 지원)
  - ※중간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서는 1년 단위로 진행.
  - 단, K-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 연구는 3년 (2026.3. ~ 2029.3.)임

## □ 추진주체

문화체육관광부 · 한국문화예술위원회 · 한국문화관광연구원(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력 연구) · 17개 광역문화재단 및 광역자치단체

## □ 지원규모

- 총 1,080백만원(일반회계/ 민간경상보조)
  - 광주광역시 120명 지원(1인당 연간 900만원)

## □ 지원대상

- 39세 이하(1986.1.1. 이후 출생) 순수예술 원천창작 예술가 개인

## □ 지원직군

- 원천 창작자: 작가, 극작가, 연출가, 안무가, 작곡가, 지휘자, 평론가 및 시각예술 큐레이터, 공연예술 프로듀서 등
- 창작 전환형 실연자: 배우·무용수·연주자 등 기존 실연자라도 구체적인 원천창작 경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창작계획을 제출하고 결과물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우 신청 가능
- ※ 제외 : 실연만 수행하는 활동, 행정·경영·기술지원 인력, 지원 분야 미해당 직군
- ※ 교차·융합형 창작 가능 : 장르 구분 없이 자율적 협업 허용  
(예: 문학 창작자의 극단과 협업, 연극 프로듀서의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진행 등)

## □ 지원분야

- 문학, 시각예술, 공연예술(연극·뮤지컬, 무용, 음악, 전통예술), 기타(다원예술, 융복합예술)

## □ 지원내용

- 연간 창작활동 사례비 900만원
  - 상·하반기 분할 지급(상반기 400만원, 하반기 500만원)
  - 선정 예술가 제출 중간결과보고서 기반 관리, 예술인고용보험 비대상
- ※ 지원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.3% 혹은 기타소득세 8.8% 공제 후 지급
- ※ 유의사항 : 본 사업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/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○ 2개년(2026~2027년) 지원대상자 선정

- 연도 중 지원대상자 필수 의무사항 미이행(보조금 사용제한 업종 지출 확인 등), 윤리적 자격요건 위반(지원대상자의 성폭력·성희롱 확정 판결 발생 등) 시 2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지원조건

- (지원신청) 지원신청서 外 필수 첨부서류 4종 응답 및 제출(필수)
- (교부단계) 창작활동 수행 관련 협약 체결
  - 연도별 협약 체결 후 지원금 교부
- (중간 및 결과보고) 반기별 활동보고서 제출 및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
  - 결과보고 시 창작물 필수 제출  
(원고, 음원, 미술작품, 공연결과보고서 등 신규 창작 증빙)
  - ※ 주의 : 부정수급 확인 시 약정 해지 및 참여제한 적용

□ 사업 추진체계

문화체육관광부 → 한국문화예술위원회(한국문화관광연구원) → 광역 자치단체·광역문화재단 → 청년 창작자

- 문화체육관광부 : 정책 방향 설정, 성과관리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 : 사업 총괄, 체계 운영
- 한국문화관광연구원 : 증거기반 성과평가 운영
- 광역자치단체 : 지방비 매칭 및 예산 확보
- 광역문화재단 : 공모, 심사, 활동지원, 정산
- 청년 창작자 : 창작활동 수행 및 결과보고

□ 창작지원금 지급 절차

구분	주요 내용
협약 체결	광주문화재단-창작자 약정 체결
교부신청	창작활동 계획서 제출 → 상반기 지원금 지급(400만원)
중간점검·모니터링	상반기 활동보고서 제출·검토 → 하반기 지원금 지급(500만원)
결과관리	결과보고서 및 창작물 검토, 만족도 조사, 우수사례 관리

## □ 유의사항

○ 본 사업은 동일 기간 내 하기 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를 원칙적으로 제한함.

-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「예술기반청년일자리지원사업」, 「청년예술가도약지원」, 「문학상주작가 지원」
- ② 예술인복지재단 「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」, 「예술인 파견지원 사업-예술로」
- ③ 예술경영지원센터 「전속작가제 지원 사업」

○ 동일(유사) 사업 및 프로그램으로 광주광역시, 광주문화재단 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제외

※ 선정 이후, 동일(유사) 사업 및 프로그램 확인 시 선정 취소

○ 창작과 무관한 활동, 허위보고,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

## □ 신청 및 접수

### 1. 신청 자격

○ 「사업개요」의 지원대상 및 지원직군에 해당하는 39세 이하 청년 예술창작자(1986. 1. 1. 이후 출생)

○ 창작 활동 경력 또는 「예술활동증명」 보유 중 1가지로 실질적 창작활동 여부 입증

- 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날짜(2026년 3월 4일\*) 기준 유효자

- 신청서 접수기간 : 2026.3.4. ~ 2026.3.31

○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예술가 신청 가능(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, 필수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)

- 단,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, 「예술인복지법」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) 제출 필수

## 2. 신청 제외 대상

- 2026년도 중복수혜 금지 사업에 이미 선정된 자
- 미정산, 부정수급 등으로 공공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
- 대학교 재학생인 자  
(전국 모든 지역의 사업 접수가 시작된 2026년 3월 4일 기준)
- ※ (대졸자의 경우) 졸업 예정자 외 휴학생 등 대학 재학 중인 일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, 졸업예정자의 경우 지원신청서 내 졸업증명서 혹은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필수
- ※ (대졸자 이외의 경우)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9세 이하 예술가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며, 별도의 고졸 학력 확인서 제출(지원 신청서 내 양식 참조)
- 방송·연예·영화·만화 등 대중예술 분야 종사자 중 순수예술 분야 창작 경력이 없는 경우

## 3. 신청 방법

- 접수기간 : 2026년 3월 4일(수) 15:00 ~ 3월 31일(화) 15:00까지
- 접수방법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을 통한 온라인 접수
- 제출서류 : ※ 필수 제출서류 4종 중 1가지라도 미제출 시 지원 대상 심의에서 결격 조치

### ① 지원신청서

(창작활동 관련 내용 기재, 창작활동 경력 혹은 예술활동증명 첨부,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증빙자료첨부, 정보제공 동의서 등)

### ② 2025년 활동실적 (PDF파일로 첨부)

· 활동실적 입력 주소 : <https://kart.spsurvey.co.kr> (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)

### ③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응답완료증 (PDF 파일로 첨부)

· 설문조사 주소 : <http://b22.hrcglobal.com/?PN=pk546> (해당링크에서 작성 및 출력)

※ 유의사항

② 활동실적과 ③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작성 웹페이지는

접수마감일 기준 13:00 마감 (13시 이후에는 작성 불가. 작성된 내용의 출력만 가능)

※ ② 활동실적과 ③ 청년 예술인 창작여건 조사 작성을 위해서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신청 필수제출서류이므로 작성시간 및 완료증 발급 시간을 고려하여 넉넉히 시간을 두고 작성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 
 ※ 문의처 :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2-2669-8483, 8423, 6910, / 070-4012-3887

④ 주민등록등본 (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, 2026. 3. 4 이후 발급 기준 (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, 「예술인복지법」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 및 국내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신고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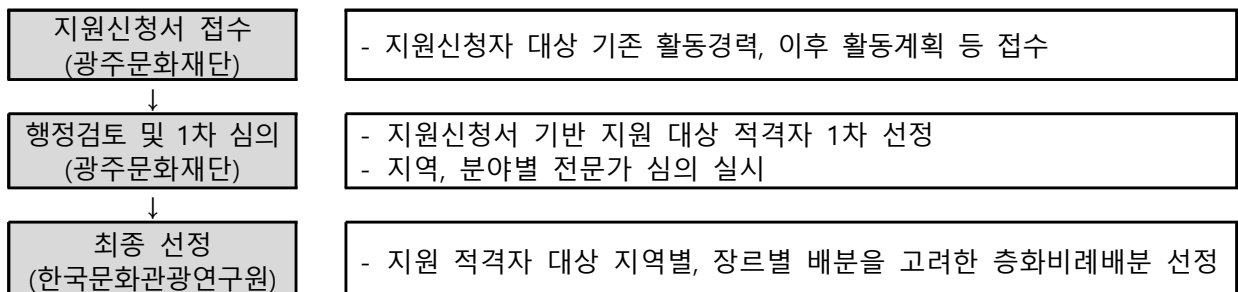
#### 4. 작성 유의사항

- 계획서에는 창작 목표, 추진 일정, 협력 방식, 결과물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
- 창작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,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단순 근로 성격의 활동은 인정되지 않음

### □ 심의 및 선정

#### 1. 심의 및 선정방법

- 서류심사(1단계/ 광주문화재단) → 총화비례배분 방식 선정(2단계/ 한국문화관광연구원) 실시
  - (1단계) 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, 창작활동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중심 지원 적격자 선정(3배수 이내)
  - (2단계) 3배수 이내 지원적격자에 대하여 지역별, 장르별 배분을 고려하여 전국 3,000명 선정 **\*5월 발표**
- ※ K-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비교집단 약 3,000명을 별도 선정



## 2. 1단계 심의 기준

구분	가중치	세부 평가항목
창작활동 실적 및 역량	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신청자가 해당 지원사업 청년 창작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하는가? (연령, 활동장르, 전문예술가 여부)</li> <li>• 기존 창작활동 과정과 결과물에서 사업 수행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가? (활동건수 수준, 활동과정의 독창성/참신성 등 고려)</li> </ul>
창작활동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	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신청 계획이 순수예술 분야 창작활동 지원으로서 타당성과 적절성을 갖추었는가?</li> <li>• 활동계획(목표, 방법, 추진일정 등)이 구체적이며 향후 확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가?</li> </ul>

※ 2단계 증화비례배분의 경우,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지원적격자 3배수 대상 지역별, 장르별 편중 완화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새로운 선정 방식 채택

## 3. 지원신청자 대상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방법 및 절차

- 청년 예술 창작활동 생태계 집단 및 향후 지원규모 확대·제도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자 대상 청년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 실시
  - 조사방법 : 지원신청자 기초 정보(인구통계학 정보, 소득, 창작역량 등) 수집 및 증거기반 성과평가 활용
  - 조사절차 :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 시스템에서 링크를 통해 <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> 응답 후 ‘응답완료증’ 을 PDF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첨부서류로 제출(업로드)

※ 청년 예술인 창작 여건 조사는 지원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함

※ 문의처 :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2-2669-8483, 8423, 6910, / 070-4012-3887

## 4. 선정 및 협약

- 심의 결과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(5월중), 선정자는 개별 통보함.
- 선정자는 광주문화재단과 협약(약정)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일정, 의무사항 등을 확인해야 함.
-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상반기 창작활동을 개시해야 함

## 5. 최종 선정 후 필수 이행사항

- 광주문화재단 ↔ 창작자 간 창작활동 수행 관련 협약 체결
  - 성폭력·성희롱 예방교육 이수, 지원금 수혜 대상자 의무사항 숙지 등
-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, 창작 결과물 제출
  - 지원선정 후 최종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
- 신청자는 K-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증거기반 성과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등에 참여해야 함.
  - 설문조사 주소 : <http://b22.hrcglobal.com/?PN=pk546>

## □ 결과보고 및 정산

### 1. 결과보고

- 창작자는 창작활동에 대한 중간·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
- 최종 결과보고 시에는 창작 결과물(원고, 악보, 음원, 영상, 공연 결과보고서 등)을 제출해야 하며, 결과물은 광주문화재단이 관리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
-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미제출 시 하반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
### 2. 정산

- 창작지원금은 사업소득세 3.3%/기타소득세 8.8% 공제 후 지급하며,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광주문화재단은 반기 결과보고 검토 후 잔여 지원금(하반기)을 지급함
- 부정수급, 허위보고, 타 사업활동 대체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

## □ 기타 사항

- 본 사업의 창작지원금은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며, 기초생활보장/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 반영으로 인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 내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

## □ 문의처

- 광주문화재단 창작지원팀 062-670-7464